콩고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1. 국명 : 콩고 공화국(Republic of the Congo) 2. 수도 : 브라자빌(Brazzaville, 130만명) 3. 인구・면적 : 4,662,446명(2014년), 342,000㎢(한반도의 약 1.5배) 4. 공용어 : 콩고어, 불어 5. 1인당 GDP : 4800불(2013년) 6. 독립일 : 1960. 8. 15.(프랑스로부터) 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양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république du Congo

2. 연혁

○ 헌법재판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7일 조직법률 제2003-1호와 헌법재판소 내규에서 정하고 있음

○ 합헌성 통제 원칙은 1958년 11월 28일 헌법에 의한 헌법자문위원회(Comité constitutionnel consultatif)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음[1)]

○ 합헌성 통제는 1961년 3월 2일 헌법 제58조에 의해 창설된 대법원(Cour suprême)으로 이어졌고 국제조약 및 협정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짐[2)]

---

1) [1958년 11월 28일 헌법 제8조]
정부가 제출하는 콩고 공화국 헌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담당하는 헌법자문위원회를 창설한다.

2) [대법원 창설에 관한 1962년 1월 20일 법 제4-62호 제1조]
대법원은 법률과 국제조약의 합헌성에 대해 표명한다.

○ 1962년 1월 20일 법 제4-62호로 대법원을 창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 부여 : 법률과 국제조약의 합헌성 통제

○ 1963년 12월 8일 헌법은 대법원에 합헌성 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지시키면서 모든 법원(사법법원, 행정법원, 회계법원)을 합병함

○ 1979년 7월 8일 헌법은 정치 및 사법기관은 헌법위원회를 창설하고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박탈하여 대법원을 재설치 함[3)]

○ 1992년 2월 16일 헌법과 3월 15일 헌법을 통하여 '헌법재판소' 명칭을 가져왔고, 법률과 국제조약의 합헌성 통제 및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권한분쟁에 대해서도 심판에 이르게 함으로써 권한을 확대함

○ 1997년 10월 24일 기본법(Acte fondamental)은 1992년 3월 15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조문 폐지하고 대법원에 법률, 협정 및 국제조약의 합헌성 통제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

○ 2002년 1월 20일 신헌법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소 재설치 : 법률, 협정, 국제조약의 합헌성 통제 및 선거와 국민투표 적법성 통제 권한 부여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[4)]과 부소장(Vice-President)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(Member)으로 구성(헌법 제144조)

○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, 3인은 직접 임명하고 6인은 상원의장・하원의장 및 대법원의 추천(각각 2인)에 의해 임명

---

3) [1979년 7월 8일 헌법 제93조]
대법원은 콩고공화국의 최고법원이다. (…) 대법원은 법원의 사법활동을 통제하고 법률의 합헌성 통제와 의견을 표명한다.

4) 2012년 9월 17일부터 Auguste ILOKI가 헌법재판소 소장임.

○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 가능(2003년 조직법률 제11조)

○ 헌법재판소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

○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 및 대법원직을 겸할 수 없음(제145조)

4. 권한(헌법 제146조)

○ 법률, 국제조약 및 협정의 위헌여부심판

○ 상·하원의원,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 적법성을 감시하고 투표결과 공표[5)]

○ 조직법률의 공포 전, 상·하원의원 의사규칙 시행 전에 회부됨

5. 심판청구권자

○ 사전적 위헌법률심판(추상적 규범통제) 청구권자

- 대통령, 상원의장, 하원의장, 상원 및 하원의원의 1/3(헌법 제148조)

○ 사후적 위헌법률심판

-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청구됨(헌법 제149조)

○ 상·하원의원 의사규칙 심판 청구권자 : 각 원 의장

○ 선거관련 심판 청구권자 : 대통령 선거후보자,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후보자 및 그의 대리인, 정당, 정치단체

○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함. 단, 청구권자의 요구에

5) 2016년 3월 20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Sassou Nguesso의 선거결과 공포(Décision n°005/DCC/EL/PR/16 du 4 Avril 2016).

따라 긴급한 경우, 그 기간은 10일로 단축됨

○ 심판청구방식 : 서면제출(청구권자의 이름, 출생년월일 및 장소, 직업, 주소 기재)

6. 심리 및 결정

○ 7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으로 심리 개시

○ 참석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(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의 표로 결정)

○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공포되거나 적용될 수 없음(헌법 제150조)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고 공권력과 모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속함

7. 연락처

○ 주소 : Cour constitutionnelle
Boulevard Alfred Raoul
B.P. 543
BRAZZAVILLE

○ 홈페이지 : http://cour-constitutionnelle.cg/

※ 출처 : 콩고 공화국 헌법
콩고 헌법재판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명령
콩고 헌법재판소 내규
콩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(2016. 4. 작성)